



의안번호	제 2016 - 17호
보 고 연 월 일	2016. 7. 11. (제7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03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5.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2
6.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수정 여부 논의 결과	3
II. 향후 일정	5

<별첨자료>

안종열,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이 용, “기술유출 사범 -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안종열, “영업비밀침해행위 - 양형기준 수정 여부”

I. 제10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6. 20.(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수정, 범현, 안종열, 이용, 이진국, 정준화, 최준혁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수정 여부 검토

4.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상습범 ⇨ 양형기준 처리 기준 명확화(의견일치)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습범 가중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상습범 가중을 하는 것이 적정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권고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로 본다.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관련

-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비해 높으므로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 특별가중인자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반박'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과 이중으로 가중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특별가중인자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반박'에 해당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의 특별가중인자)'과 이중으로 가중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5.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상습범 ⇨ 양형기준 처리 기준 명확화(의견일치)

- 절도범죄의 검토와 같음

(2) 수정안에서 누락된 부분 보완(의견일치)

- 누범장물 특별가중인자 중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 '특별

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절도범죄 및 일반장물에 대한 양형기준과 체계적합성 유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u>(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u>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6.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수정 여부 논의 결과

가. 현행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5년 이하 ⇒ 7년 이하 징역[16.6.30.시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 5년 이하 징역
제2유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10년 이하 ⇒ 15년 이하 징역[16.6.30.시행]

나. 전문위원 의견 취합

(1) 적극적 견해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행위의 법정형 상향 조정(위 가.항의 붉은 색 글씨 부분 참고)
- 산업기술유출행위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반영 및 주의 환기

(2) 소극적 견해

- 산업기술유출행위 법정형의 상한만 상향 조정 ⇒ 양형기준의 급박한 수정 필요성 없음
- 양형기준 시행(2012. 7. 1.) 후 영업비밀침해행위 단일범 사건 수가 매우 적음 ⇒ 시행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 있음
 - 2013년(13건), 2014년(31건), 2015년(20건)

(3) 절충적 견해

- 법정형 상향 폭이 크고 가벌성이 중한 국외침해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4차 전체회의는 2016. 8. 22.(월) 개최하기로 함